



# 개정 환경보전법 주요내용 해설

(연재 II)

정혁진 / 환경청 법무담당관

## Ⅲ.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

### 1. 배출부과금 부과대상

#### 가. 부과대상 배출시설

수질·대기·악취배출시설 (소음·진동 배출시설은 제외)

#### 나. 부과대상 오염물질

##### 1) 수질배출시설 : 13개

유기물질 (BOD, COD) · 부유물질 (SS) 크롬 및 그 화합물 특정유해물질중 9개

\*순수질량 (오염부하량) 을 계산하여 kg 당 단위로 부과

##### 2) 대기배출시설

아황산가스·불소화합물 (특정유해물질) ·분진

\*순수질량을 계산하여 kg 당 단위로 부과

##### 3) 악취배출시설

\*구성물질이 복잡다양함으로 이들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오염물질로 취급하며, 체적 1,000 m<sup>3</sup> 당 단위로 부과

### 2. 배출허용기준

가. 가스 : 시설별, 연료별, 지역별로 차등 설정

나. 분진 : 시설별, 연료별, 시간당 배출가스량별로 설정

다. 소음, 진동 :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구분

설정·진동 배출허용기준 설정

\*보정표에 의하여 평가진동 레벨이 60 dB(V) 이하

라. 악취 : 측정지점을 측정 당시의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.

마. 폐수 : 이수목적에 따라 전국을 청정, 가나, 다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배출허용 기준을 차등설정.

\*배출농도는 시간과 더불어 변동함은 사실이나, 배출허용기준은 변동하는 농도의 평균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변동하는 농도의 최대치가 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함.

### 3.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기준

#### 가. 농도규제기준

##### 1) 개념

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제

##### 2) 문제점

①농도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점검 시점에 따라서 허용기준초과 여부도 변동, 따라서 점검시점에 따라서 위반여부의 판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확인 곤란.

②배출시설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위반여부가 오직 농도에만 의존함으로 다량 배출업소에 유리하고 소량배출업소에 불리.

③위반여부를 당국에서 적발하기 전까

지는 부과금부과 불가능, 행정비용 과다 소요

나. 총량규제기준

1) 개념

농도에 관계없이 환경에 배출될 오염물질총량을 지정 또는 이를 대상으로 부과금 부과.

2) 장 점

①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적발을 위한 행정비용 절약 가능

②대형 및 소형배출업소간의 공평성 유지

3) 문제점

①배출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영향권별 관리로 지역별 오염삭감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, 과학적 시스템의 설치, 운영이 선결요건이며, 획일적 농도규제기준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공단지역등 오염우심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필요

다. 구미의 제도와의 비교

	구	미	한	국
설치허가	한국과 비슷	기술감리 적합판정	설치허가만 존재하며 조업허가에 해당되는 개념은 없음.	
조업허가	조업시의 구체적 조건명시 배출허용기준의 개별화 평균 . 최대 배출허용농도 1일 배출허용 오염부하량 지정	조업시의 조건을 모두 법령에 규정 배출허용기준 단일 (금번 일부 차등화) 평균치 . 최대치 개념 없음.	조업시의 조건을 모두 법령에 규정 배출허용기준 단일 (금번 일부 차등화) 평균치 . 최대치 개념 없음.	금번 자진신고제도 도입
운영방식	일정기간 ( 2년 )	자가측정신고횟수 등 수리 . 고장시이 신고의무 규정		

	마다 갱신	갱신규정 없음.
지도 . 단속	조업허가조건 위배여부	법규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 여부
배출부과금부과 . 산정	배출허용 기준과 별도로 산정	배출허용기준을 근거로 산정

4. 부과금 부과절차 및 산정방법

가. 지도 . 점검

1) 지도 . 점검사업장 관할

환경지청장 지도 . 단속대상 사업장

2) 검체의 의의

①법령위반 ( 배출허용기준초과 ) 여부를 판단하는 법상의 객관적 근거

②부과금 산정시 배출기간의 기산일

-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검체일을 배출기간 산정의 기산일로 함 ( 영 제 17 조의 9 )

③부과금 산정시 오염상태의 결정기준

- 부과금 산정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은 검체시의 농도 및 배출량을 적용 ( 영 제 17 조의 9 )

나. 개선명령 ( 시 . 도지사 )

근거법률 법 제 17 조

1) 명령사유

①법 제 14 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서 영 제 17 조의 5에서 정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때

②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명령을 불이행한 때

2) 명령시점 : 배출허용 기준위반 또는 기기등 부착조치 불이행이 인정된 때

3) 수명자 : 당해 위반사업자

4) 명령시 지정할 사항

①개선할 내용의 지정

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. 개선 .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

②부령 제 27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기간의 지정

5) 개선명령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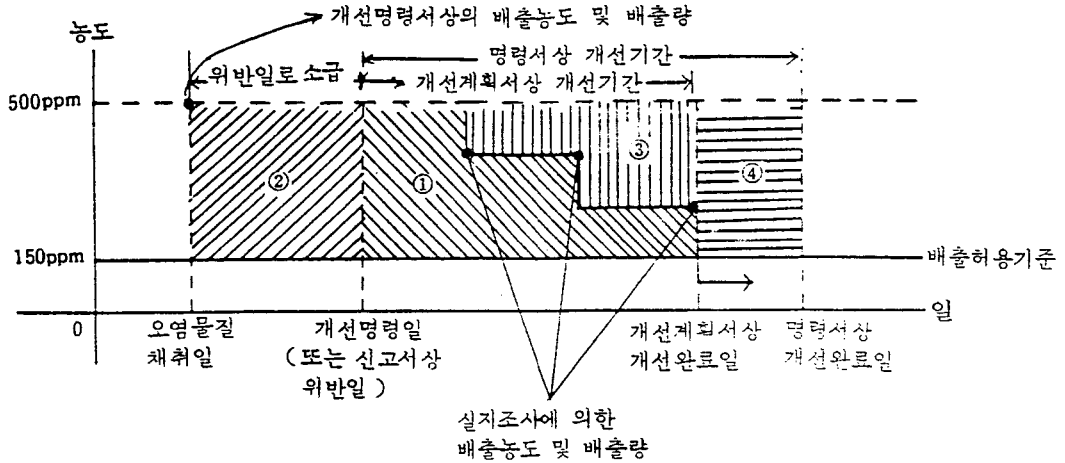
①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업자는 위법하게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금 부과대상이 될 뿐 아니라 조업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 및 벌칙적용의

대상이 됨.

②자진신고자의 경우는 개선명령 없이 신고에 의한 부과금 부과처분을 하게 됨. 또한 개선명령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제재 및 벌칙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됨.

다. 개선계획서

1) 배출부과금 부담의 규모 비교



가) 무신고자의 경우

- ①개선계획서 미제출시의 부과대상 면적 : 그림중(1)+(2)+(3)+(4)
- ②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: 그림중 면적(1)+(2)+(3)+(4)
- ③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도 명시된 경우  
개선기간중 농도 및 배출량 변경명시 : (1)+(2)  
개선기간중 농도 및 배출량 변경불명시 : (1)+(2)+(3)

- 개선기간·개선내역 및 설계도
- 배출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제한 내용 (오염물질 농도,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빙서 첨부)
- 공법 등의 개선내용 (오염물질 농도,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빙서 첨부)
- 오염물질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 
<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운전미숙에 의한 경우>
-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사설의 처리능력 비교내용
- 배출 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내용

나) 자진신고자의 경우 (1)

2) 무신고자의 개선계획서

가)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및 내용

- ①기한 : 개선명령일로부터 15 일 이내
- ②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(영제 17 조의 6, 규칙 제 30 조)

<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결함 또는 고장에 의한 경우>

나) 개선계획서 제출의 의의

- i) 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제출되었더라도 영제 17 조의 6 및 규칙 제 24 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.

①개선기간중 개선명령서상에 명시

된 오염상태 (배출농도 및 배출량)로 부과금을 산정하게 됨으로 사업자에게 불리.

②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: 위 그림 중 면적 (1)+(2)+(3)+(4)

ii) 영 제 17조의 6 및 규칙 제 24 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.

①개선기간중의 배출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가 첨부된 경우.

- 동 내용의 사실여부를 실지조사 확인하여 위의 그림(1)의 면적처럼 개선기간중의 부과대상오염물질량을 산정

-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: 위 그림중 면적 (1)+(2)

②가동중단 또는 배출농도 및 배출량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

- 개선기간중 개선명령서상에 명시된 오염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 (위 그림중 면적 (1)+(3))

-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: 위 그림중 면적 (1)+(2)+(3)

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미숙의 경우

- 오염물질 발생량, 방지시설의 처리능력,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그 방지대책이 명시된 때는 개선계획서와 개선완료보고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음.

-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: 위 그림중 면적(2)

3) 자진신고자의 개선계획서

가) 자진신고 시점

①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.

나) 신고사유

①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·

변경·고장·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

라.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

1) 배출부과금 산정 기본공식

부과금 = 오염물질 1kg (또는 배출물질 1,000 mV<sup>3</sup>) 당 부과금액 ×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(또는 배출물질량) ×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(또는 악취농도별) 부과계수 × 지역별 부과계수 ×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× 위반회수별 부과계수

2)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(영 제 17조의 9 제 1항)

가) 산정공식 :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× 배출기간 (조업일수)

나) 일일유량 산정방법 : 측정유량 × 일일조업시간

측정유량단위 폐수 : ℓ/min

가스 : m<sup>3</sup>/H

일일조업시간 : 최근 30 일간의 1 일 조업시간 평균치

다) 배출기간

①자진신고자

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개선완료일

②무신고자 (무허가자 포함)

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(알수 없을 때 오염물질 검체 채취일)로부터 개선명령 (이전명령·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포함)이행완료일

3)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(영 별표 2, SO<sub>2</sub>의 경우)

①배출허용기준 20%미만 초과시 : 부과계수 1

②배출허용기준 20%이상 100%미만 초과시 : 20%초과 단위로 0.3씩 누증 (1.3-1.9)

③배출허용기준 100%이상 400%미만 초과시 : 100%초과단위로 1씩 누증 (2.5-4.5)

라) 배출량 및 배출기간 산정기준 총괄

구	분	배출농도 및 배출량	배출기간	
			시점	종점
자진신고자		신고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 확인시	신고서상 지정일	신고서상 완료일
무신고자	추정적용시 (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내용 불명시)	개선명령서상 (오염물질 채취시)	오염물질 채취일	개선명령서상 (지정일)
	실지조사시	오염물질채취일 - 개선명령	오염물질 채취일	개선명령일
		개선기간중	개선계획서상 (배출농도 및 배출량 변경)	개선명령일

\*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는 높은 수치의 농도기준으로 산정

4)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(영 제 17조의 10 제(1)항)

- ① 시행년도 (1987년) : 2.0736
- ② 다음년도부터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함.

5)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(영 제 17조의 10

제(2)항·제(3)항)

- ① 2회계년도를 한 단위로 함.
- ② 위반회수가 0이면 100/100, 첫회부터 105/100 곱하여 추가함.
- ③ 위반회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(조업정지, 이전, 폐쇄명령 포함)을 받은 회수로 함. (단, 자진신고자는 위반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- ④ 회수의 계산은 분야별 (대기·수질등)로 따로 계산함. \* <다음호에 계속>

新明心寶鑑 10

呂榮公이 曰內無賢父兄하고

外無嚴師友而能有成者鮮矣 나라.

- 訓子篇에서 -

여영공이 말하기를 「집안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능히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드므니라」고 하셨다.

즉, 사람이 큰 일을 이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어진 부형(父兄)의 뒷받침과 엄한 스승이나 벗의 지도편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.